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20
----------	-------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소병훈·안태준·박정  
박희승·용혜인·전현희  
이개호·허영·강준현  
부승찬·조계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의 경우 지역별·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표준화된 지표는 부재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은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어렵게 하여 효율적인 의사 인력 배치 및 관련 지원 대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의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

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의사 인력 수급 관리 및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2).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악하기”를 “파악하고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의 산정과”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의사편재지표 산정·공표의 주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의사편재지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전문과목별 의료 공급의 불균형 해소 및 효율적인 의사 인력 배치를 위하여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하 “의사편재지표”라 한다)를

산정·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인구 수 및 연령 분포
2. 지역별 질병 분포, 의료 이용량 및 의료 접근성
3. 지역별 필수의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필수의료를 말한다) 공급  
    수준
4. 전문과목별 업무 난이도 및 위험도
5. 그 밖에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인력의 수급 적정성 파악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의사편재지표 산정·공표의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략)</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u>&lt;신설&gt;</u></p> <p>8. (생략)</p> <p>③ ~ ⑥ (생략)</p> <p>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u>파악하기</u>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6. <u>그 밖에</u>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p>	<p>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의 활용에 관한 사항</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7조(실태조사) ① ----- ----- -----<u>파악하고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u>-----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의 산정과</u>----- -----</p>

항

② · ③ (생략)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③ ~ ⑦ (생략)

<신설>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의사편재지표 산정 · 공표의 주기 ·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의사편재지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 · 전문과목별 의료 공급의 불균형 해소 및 효율적인 의사 인력 배치를 위하여 지역별 · 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하 “의사편재지표”라 한다)를 산정 ·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인구 수 및 연령 분포

2. 지역별 질병 분포, 의료 이용량 및 의료 접근성

3. 지역별 필수의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필수의료를 말한다) 공급 수준

4. 전문과목별 업무 난이도 및 위험도

5. 그 밖에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인력의 수급 적정성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의사편재지표 산정·공표의 주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